

수신자 : 제천시의회 의장

## 제 목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

-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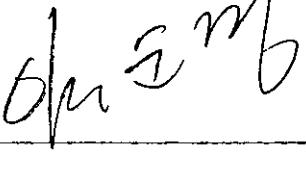
붙 임 : 1. 발의서명서

2.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07. 11.

발의자 양순경 의원(양순경)  
외 4인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서명서

의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봉수		
강천승		
조덕희		
박성자		
양춘기		

##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9
------	------

발의 연월일 : 2007. 11.  
제출자 : 양순경 의원 외 4명

### 1. 제안이유

-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에 대한 관심 및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5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사업을 규정 하였으며(안 제5조)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예우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부칙)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16조 3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보조금 관리조례」

나.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제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제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한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 I.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 및 병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본회를 수도권에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회를,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II.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단체의 범위)** 사회단체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2. 비영리단체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①사회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중, 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2.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사업

3. 문화, 예술, 체육관련행사

4.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개정 2005. 12. 2>

②세부사업기준에 대하여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III.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